

“법정교육관련 개정법령”

에너지이용합리화법

제88조 (교육)

-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인증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③ 에너지관리대상자,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·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〈전문개정 2003.12.30〉

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

제50조 (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)

-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·기간·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12와 같다. 〈개정 2004.7.12〉
-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징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〈개정 2004.7.12〉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

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
〈전문개정 1999.8.19〉

부칙 〈제239호, 2004.7.12〉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의 교육에 관한 특례) 이 규칙 시행 당시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등록 또는 선임된 자로서 계속하여 동시에 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종사하는 자는 제50조제1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(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) 에너지관리공단 시공업자단체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및 한국열관리사협회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도 하반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〈별표 12〉

〈신설 2004.7.12〉

〈비고〉

- 난방시공업체1종기술자과정 등에 대한 교육과 목 교육수수료 및 교육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시공업의 기술인력은 난방시공업체1종·제2종 또는 제3종의 기술자로 최초로 등록된 날부터,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최초로 선임(구조 및 기종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교육과정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,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.
- 위 교육과정 중 난방시공업체1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난방시공업체2종·제3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, 중 대형보일러조종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형보일러 압력용기조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- 산업자원부장관은 제도의 변경, 기술의 발달 등 안전관리환경의 변화로 효율향상을 위하여 추가로

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의 기관·기간·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

제22조 (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)

-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·기간·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3의2와 같다.
-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〈별표 3의2〉

〈신설 2004.7.12〉

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(제22조제1항 관련)

교육과정	교육기간	교육대상자	교육기관
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	1일	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신고된 자	에너지관리공단

〈비고〉

- 에너지관리자기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에너지관리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최초로 신고된 연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에너지관리자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다시 에너지관리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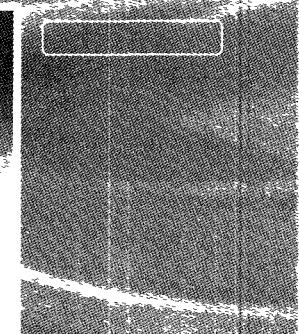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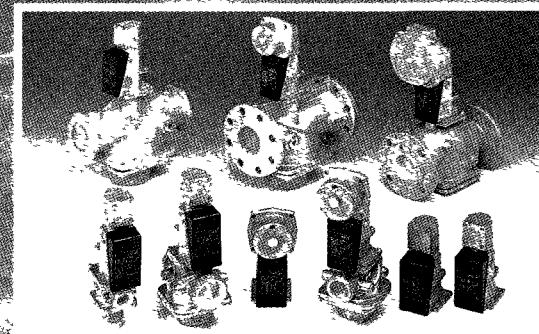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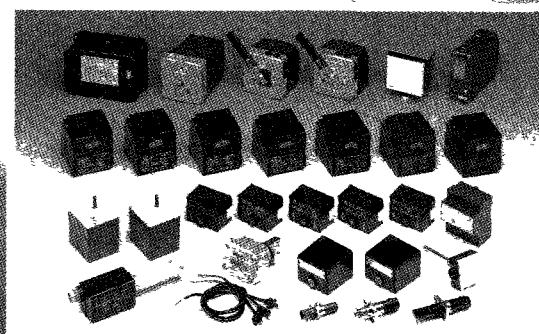
광고문의 T.2679-6343

콘트롤키기의 평가 - 하이콘트롤플스

www.hicontrol.co.kr

흔들리지 않는 명성 - 하이콘트롤플스

최고를 찾는 것은 모두가 한결같습니다.



CE IEC CSA DNV

Exproof omello

UL CUL

Honeywell

KNF VDO

취급업체

CE CSA DNV

Exproof



하이콘트롤플스주식회사

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1258번지(중앙유통단지 다동 4412호)
TEL/(02)2612-6346(代) FAX/(02)2612-6348